

2025년 교육전문직원(장학사·교육연구사) 임용 공개전형기준 주요 개정사항

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

주요 개정 내용

구분	제33차 개정(2024.10.8.개정)	제34차 개정(2025.4.8.개정)
제2장 임용 후보 자의 추천	제7조(평가위원회)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, 50%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. 1. 위원회는 내부위원 3인과 외부위원 4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. 2. 위원회 간사는 교원인사기획담당장학관이 되고,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.	제7조(평가위원회)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, 50%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. 1. 위원회는 내부위원 3인과 외부위원 4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으로 한다. 2. 위원회 간사는 교원정책기획담당장학관 이 되고,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.
제3장 평정의 원칙	제9조(평정의 원칙) ③ 서류평정자는 교원인사기획담당장학관, 확인자는 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.	제9조(평정의 원칙) ③ 서류평정자는 교원정책기획담당장학관 , 확인자는 교원인사정책과장 으로 한다.
제6장 임용	제23조(임용 방법) ⑥ 지역전형으로 임용된 교육전문직원은 직무평가 후 재임용될 경우 최초 임용된 교육지원청에서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. ⑦ 교육전문직원(임기제전형 제외)은 3년 임기로 임용되며, 교육전문직원 직무평가 결과에 따라 재임용되거나 임용 전 직위로 복귀하여야 한다.	제23조(임용 방법) ⑥ <삭제> ⑦ <삭제>